

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이원화된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대한 생생한 강의!

상장회사 특례 규정의 이해와 실무

본 과정을 통해 상법과 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’에 규정된 상장회사 특례 규정 전반을 살펴보고, 관련 주요 쟁점과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

왜 ‘상장회사 특례 규정’에 대해 학습해야 하는가?

상장회사 특례 규정에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사외이사 등을 선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주식 등을 발행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M&A를 진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

따라서 상장회사의 법무팀은 물론, 재무, 전략기획 및 M&A를 담당하는 실무자라면 해당 틀에 규정을 보다 정확하게 솔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

과정개요

교육일시 : 2018년 5월 25일(금) / 10:00~17: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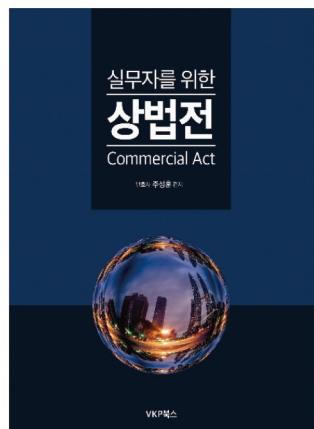
교육장소 : 로애비 교육센터 (2·3호선 교대역 1번출구)

교육대상 : 기업 법무, 준법감시, 재무, 전략기획, M&A 관련 실무자, 경영진, 변호사 등
교육특징 :

- 상장법인 ‘지배구조에 관한 특례’ (상법 제542조의2~13)에 대한 해설과 이해
 - 상장법인 ‘재무관리에 관한 특례’ (자본시장법 제165조의2~19)에 대한 해설과 이해
 - IR 협업경험과 로펌에서의 풍부한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 사례 소개

상장회사 특례구조

자본시장법 시행 전
(2009. 2. 4 이전)



강사소개

주성훈 변호사

-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/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
 -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수료(IBM률 전문)
 -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/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
 - 법무법인 KCL 소속변호사
 - 우리투자증권 IB본부 M&A팀 사내변호사
 - NH농협증권 IB본부 IB지원팀 사내변호사
 - 법무법인 지평 소속변호사
 - 교보증권 기업인수목적회사(SPAC) 대표이사
 -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 TFT 참여
(2011 해지펀드 도입/2013 PEF 등 사모펀드제도 개선)
 - 협) 법무법인 시현 대표변호사